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51
----------	-------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강기윤 · 김미애 · 최형두
유상범 · 최영희 · 최연숙
백종헌 · 이종성 · 유의동
서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제3조(「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의 정지”를 각각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로 한다.

제7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u>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u>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폐쇄조치 등) ① ~ ④ (생략) <u>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u> <u>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u> <u>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u> <u>어야 한다.</u>	제31조(폐쇄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u> <u>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u> <u>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u> <u>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u> <u>따른다.</u>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제>

<u>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삭 제></u>
<u>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4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u>	<u>②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u>
<u>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 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 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u>
<u>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삭 제></u>
<u>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 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u>	<u><삭 제></u>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
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
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이행강제금) ①·② (생략)	제24조(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삭 제>

<u>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 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 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은 징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 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 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징수한다.</u>	<u><삭 제></u>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u>사업의 정지</u> ,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 ----- ----- <u>6개월 이내</u> <u>의 사업 정지</u> ----- ----- --.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1.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2. ----- ----- ----- ----- -----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3. ----- ----- ----- ----- ---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4. ----- -----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 -----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 -----
②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제 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u>사업</u> <u>의 정지</u> ,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 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② ----- ----- ----- ----- ----- 6개 <u>월 이내의 사업 정지</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 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 다.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 조에 따른다.